



## 제8차 하도급분쟁조정회의 개최

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제조, 수리 및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 협회 내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0년 9월 6일 제8차 하도급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하였다. 동 조정회의에 상정된 주요 분쟁사안과 그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

### ◆ 조정 성립(15건)

#### ■ 성일건설(주)에 대한 건설하도급 분쟁 건

- 공사 타절로 인한 정산을 해주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 조정 안대로 하도급대금을 24,909천원으로 정산합의하고 지급하여 조정 성립.

#### ■ 푸른조경에 대한 건설하도급 분쟁 건

-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, 조정 안대로 어음할인료 7,035천원을 지급하여 조정 성립.

#### ■ (주)한일플랜트에 대한 제조하도급 분쟁 건

- 타업체에 비하여 단가가 높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고 기 결제한 어음에 피사취를 설정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, 조정안대로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7,480천원을 지급하고 피사취를 해제하여 조정 성립.

#### ■ (주)센서스에 대한 제조하도급 분쟁 건

- 하자를 이유로 클레임을 제기하고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, 조정안대로 클레임금액을 185천원으로 정산하고 1,355천원을 지급하여 조정 성립.

#### ■ (주)엑스포디자인에 대한 제조하도급 분쟁 건

- 하자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고 추가제작비용을 인정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사안이나, 조정안대로 하도급대금 및 추가비용을 21,638천원으로 정산합의하고 지급하여 조정 성립.



#### ■ (주)다정종합건설에 대한 건설하도급 분쟁 건

- 추가공사 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하려 하자 신고인이 수령을 거부하여 발생한 분쟁 사안이나, 조정안대로 1,749천원을 지급하여 조정 성립.

#### ■ 남영건설(주)에 대한 건설하도급 분쟁 건

-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인이 공사를 타절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, 조정안대로 타절정산금 30,500천원을 지급하여 조정 성립.

#### ■ (주)남선정공에 대한 제조하도급 분쟁 건

- 발주량만큼 납품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,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, 조정안대로 22,001천원을 지급하여 조정 성립.

#### ■ (주)삼광베베에 대한 제조하도급 분쟁 건

- 납기지연 및 품질불량을 이유로 클레임을 제기하자 클레임금액이 과다하다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, 조정안대로 클레임금액을 635천원으로 정산하고 과다공제금 640천원을 지급하여 조정 성립.

#### ■ (주)삼우건설에 대한 건설하도급 분쟁 건

-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, 조정안대로 23,000천원을 지급하여 조정 성립.

#### ■ (주)영우토건에 대한 건설하도급 분쟁 건

- 하도급대금을 타수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배서를 해주지 않고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, 조정안대로 어음할인료 334천원을 지급하고 배서책임을 지기로 하여 조정 성립.

#### ■ (주)영우토건에 대한 건설하도급 분쟁 건

- 하도급대금을 타수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배서를 해주지 않고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, 조정안대로 피신고인이 배서의무를 이행하고 신고인이 어음할인료의 청구를 취하하여 조정 성립.

#### ■ (주)동화기계에 대한 제조하도급 분쟁 건

-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, 조정안대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8,180천원을 지급하여 조정 성립.

#### ■ 조광종합건설(주)에 대한 건설하도급 분쟁 건

-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고 기타 부대비용을 신고인에게 전가시켜 발생한 분쟁사안이나, 조정안대로 어음할인료 및 기타 비용을 9,000천원으로 정산하고 지급하여 조정 성립.

#### ■ (주)배은정밀에 대한 제조하도급 분쟁 건

-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, 조정

안대로 어음할인료 1,574천원을 지급하여 조정 성립.

## ◆ 조정 불성립(6건)

### ■ 신일건설(주)에 대한 건설하도급 분쟁 건

-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고 추가공사대금을 불인정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으로 양당사자가 주장하는 물량증감 차액 산정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조정기일이 경과하여 조정 불성립.

### ■ (주)동화기계에 대한 제조하도급 분쟁 건

- 하도급대금 및 자재대금을 미지급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조정내용을 피신고인이 이행을 하지 않고 조정기간이 경과하여 조정 불성립.

### ■ 동남주택산업(주)에 대한 건설하도급분쟁 건

- 어음할인료 및 추가공사대금 등을 미지급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으로 양당사자 입회하에 실제 시공물량을 실사하고 동 내용에 따라 물량정산을 하였으나, 신고인이 동 실사물량으로 산출한 실사금액을 인정하지 않고, 피신고인이 사건이첩을 요구하여 조정 불성립.

### ■ (주)메트로프로젝트에 대한 제조하도급 분쟁 건

- 하도급대금 및 자재대금을 미지급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조정내용을 피신고인이 이행을 하지 않고 조정기간이 경과하여 조정 불성립.

### ■ (유)한일종합건설에 대한 건설하도급 분쟁 건

- 하도급대금 및 추가공사비를 미지급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으로 피신고인이 부도를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여 조정 불성립.

### ■ 옥산건설(주)에 대한 건설하도급 분쟁 건

-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으로 피신고인이 조사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조사에 불응하여 조정 불성립.

## ◆ 조정 불개시(2건)

### ■ 상보건설(주)에 대한 건설하도급 분쟁 건

- 하도급법에서 정하는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납품계약에 해당하여 신고서 반려.

### ■ MS 인터내셔널에 대한 제조하도급 분쟁 건

- 피신고인의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로 법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하여 신고서 반려.